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기획처	제정일자	2010. 04. 12.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담 당						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0	2010. 04. 12.	- 공간조정위원회 규정 제정
1	2014. 01. 21	- 부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
2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3	2018. 02. 19.	-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→ 기획처, 입학관리센터 → 입학처 학생처/학생취업처 → 학생취업처 - 전공주임교수 → 학과장 변경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학 내 시설물의 공간 배치를 위하여 동원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은 주요보직 처·실장과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④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총장의 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1.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간조정
2. 캠퍼스 내 배정된 공간의 적정성 검토 및 공간의 재조정
3. 건물의 신·증축에 따른 공간 조정
4. 전공의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
5. 여유 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
6. 공간 배치 및 조정과 관련된 제반 지침 제정 및 개정
7. 기타 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상정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전결)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장의 전결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공지토록 한다.<개정 2014.01.21., 2018.02.19.>

제7조(전문위원회)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(팀)를 둘 수 있으며, 전문위원회(팀)의 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